



2021 지방세 길라잡이

2021 지방세 길라잡이

* 본 길라잡이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입니다.

* 과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세무전문가와 상담 후 처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Ⅰ 지방세 개관	04
Ⅱ 지방세 세목별 주요내용	17
Ⅲ 유용한 세금정보	53
Ⅳ 중과세와 비과세·감면제도	65

2021 지방세 길라잡이



2021
지방세 길라잡이

지방세 개관

01 지방세 개념

○ 개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그 살림살이를 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방공공재와 행정서비스, 즉 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에게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실정법상에서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합니다.

○ 법적 근거

헌법(제59조)에 의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조세법률주의)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의 세목과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할 수 있는 세목을 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서 각 세목별 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지방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탄력세율제도)

|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법률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
지방세 관계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방세 특례제한법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세의 세목, 세율 등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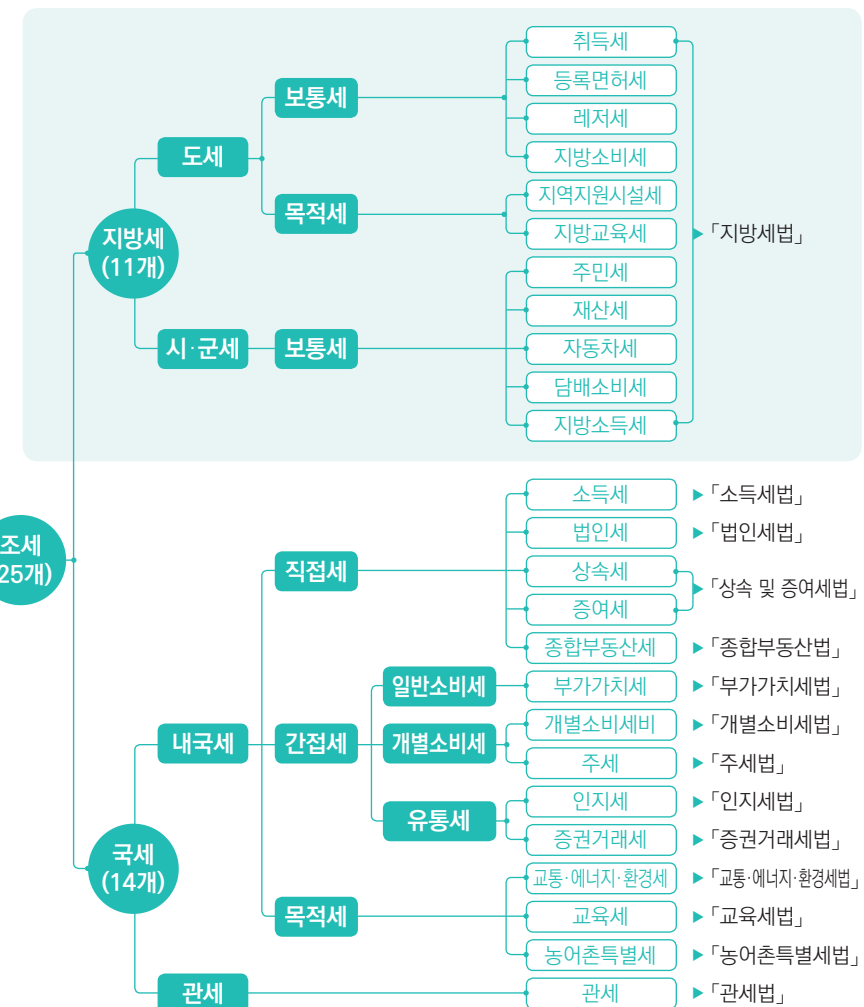
※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도 지방세 부과·징수에 근거가 되는 지방세관계법입니다.

02 지방세의 구조

○ 개념

조세는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과세권의 귀속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합니다.

국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로서 국세에는 내국세와 관세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광역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와 기초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 나누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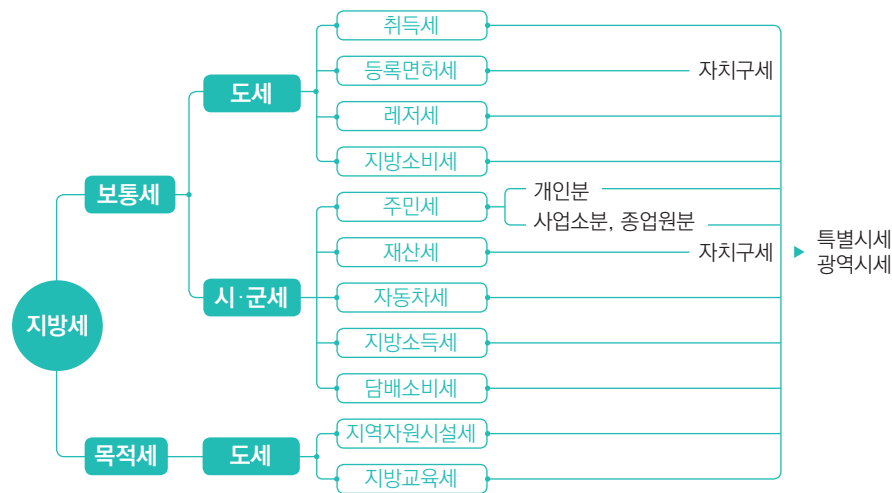
○ 광역자치단체 지방세와 기초자치단체 지방세

광역자치단체인 도 본청의 지방세 세목은 보통세로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가 있으며, 목적세로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의 지방세 세목은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와 담배소비세가 있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는 자치구세인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특별·광역시 세목입니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 재산세 중 도시지역분은 특별시세이며, 광역시의 경우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구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세의 모든 세목이 해당 도와 시의 세목입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대상과 목적

세 목	과세대상 또는 과세목적
취득세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임목,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한 자에게 부과함
등록면허세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부과하는 등록분과 각종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부과하는 면허분으로 나뉨
레저세	· 경마, 경륜, 경정, 전통 소싸움 경기의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 등의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자에게 과세함 ·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경기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에 의해서 얻은 매출액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과세함
담배소비세	·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을 과세대상으로 부과되며, 피우는 담배, 씹거나 머금은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등으로 구분함
지방소비세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세원으로 하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21%
주민세	· 개인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 그리고 사업소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함
지방소득세	· 소득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함 · 2014년도부터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됨
재산세	·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 5종의 재산이 과세대상 · 주택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일괄평가하므로 별도의 과세대상임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에 대해 과세하는 소유분과 과거 주행세인 주행분으로 나뉘고,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 과세대상 · 승용자동차의 연세액은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 다름
지역자원 시설세	·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음 * 2021년부터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함

월별	지방세		국세
	도세	시·군세	
1월	·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1.31.한) · 9월 결산법인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1.31.한)	· 등록면허세(면허분) (1.31.한)	·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1.25.한)
3월	·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분할 납부(3.31.한)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3.31.한)
4월	· 12월 결산법인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4.30.한)		·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4.25.한)
5월	· 지방소득세(소득세) 신고납부(5. 31.한)		· 소득세 확정신고 (5.31.한)
6월	· 자동차세(소유분) 납기 (6. 30.한) ·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분할 납부(6.30.한)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6.30.한)
7월	· 주민세(재산분) 납기 (7.1~7.31) · 지역자원시설세(특정 부동산분)납기(7.16~7.31) · 3월 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7.31.한)	· 재산세 [주택(1/2)·건축물분, 선박, 항공기] 납기 (7.16~7.31) ※ 주택 연세액 20만원 이하 7월에 일괄 부과·징수	·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7.25.한)
8월	·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기(8.16~8.31/ 8.1~8.31.)		

월별	지방세		국세
	도세	시·군세	
9월	· 지역자원시설세(특정 부동산분) 납기(9.16~9.30) ·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분할납부(9.30.한)	· 재산세[주택분(1/2), 토지분] 납기 (9.16~9.30)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9.30.한)
10월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10.31.한)		·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10.25.한)
11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30.한)
12월	· 자동차세(소유분) 납기 (12.16~12.31) · 자동차세(소유분) 분할납부(12.31.한)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12.31.한) · 종합부동산세 납기 (12.1~12.15)
매월	· 지방소득세(특별징수)(10.한) · 주민세(종업원분)(10.한) · 레저세(10.한)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 담배소비세(다음 달 말일 한) · 자동차세(주행분) (다음 달 말일 한) ·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와 동일)		· 교통·에너지·환경세 (다음 달 말일 한) · 원천징수 소득세 등 (다음 달 10.한)
수시	· 취득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자동차세 일할계산 수시부과 · 무신고·과소신고분 수시부과 · 기타 과세누락분 수시부과	· 등록면허세(각종 등기·등록 및 인·허가를 받을 때) · 무신고·과소신고분 수시부과 · 기타 과세누락분 수시부과	· 무신고·과소신고분 수시부과 · 기타 과세누락분 수시부과

※ 신고, 납부 등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세 목	납부방법	납부기간·납부기한
취득세	· 신고납부	· 취득일부터 60과 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까지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보통징수	· 취득 신고 후 미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
주민세	· 보통징수 · 신고납부	· 개인분 : 보통징수 (납기 8.16~8.31) · 사업소분 : 신고납부 (신고납부기간 8.1~8.31)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보통징수 · 신고납부	· 정기분 : 제1기분(6.16~6.30) / 제2기분(12.16~12.31) · 수시분 : 중고차 매매시 일할계산하는 수시분과 정기분누락자 1월/7월 수시부과 · 연세액 일시납부(1, 3, 6, 9월) / 분할납부(3, 6, 9, 12월)
지방소득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특별징수	· 법인지방소득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 개인지방소득 :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다음년도 5.1~5.31)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다음달 20일까지 · 미신고납부자 및 수시부과사유(지방세법 제62조) 발생 시 수시부과
레저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다음달 10일까지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기존 지역개발세분 : '지하수'는 보통징수)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 매년 7월(16~31), 9월(16~30) : 기존 공동시설세분
등록면허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등록분 : 등기·등록하기 전까지(등기·등록신청서 접수 전까지) · 면허분 :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에 등록면허세 납부 · 매년 1.16~31(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 보통징수	· 정기분 - 7월(16~31)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건물분 재산세 전액 납부 - 9월(16~30)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 ※주택분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 시 7월에 전액고지 · 수시분 : 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지방소비세	· 신고납부	· 지방소비세를 징수한 세무서장·세관장이 다음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징수액 납입 · 납입관리자가 시·도별로 안분하여 25일까지 각 시·도에 납입
지방교육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취득세·담배소비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저세 신고납부까지 · 주민세(균등분)·재산세·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

세 목	과세대상			세 율	
취 득 세	부동산, 차량 등 취득			일반세율 : 2.8%, 3.5%, 4.0% 등 유상취득(주택) : 1.0% ~ 3.0% 중과세율 : 4.4%, 8.0%, 8.4% 등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국세)			부가가치세액의 21% 민간최종소비지출지표에 지역별 가중치 적용배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퇴직소득			1천분의6 ~ 1천분의45	
	양도소득			1천분의6 ~ 1천분의45, 1천분의10 ~ 1천분의70	
	법인소득			1천분의 10 ~ 1천분의 25	
	특별징수			법인·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주 민 세	개인분	개인		1만원 이내	
	사업소분	사업소 연면적(330㎡ 초과) 개인, 법인		1㎡당 250원(폐수, 산업폐기물 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	
	종업원분	급여액(1억5천만원 초과)		급여총액의 0.5%	
자동차세	소유분	승용 자동차		년 1cc당 80~200원	
		승합 자동차	화물자동차	2만5천원~ 11만5천원	6천6백원~ 15만7천5백원
	주행분	교통·에너지·환경세(국세)		교통세액의 36% (탄력세율 26%, '09.5.21)	
담배소비세	담배 제조 및 수입업자			20개비(1갑)당 1,007원	
레 저 세	승마(승자) 투표권 발매액			발매액의 10%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시설분	건축물, 선박		재산가액의 0.04~0.12%	
	특정자원분	지하수, 발전용수 등		채수량 1㎡당 20원, 발전용수 10㎡당 2원	
지방교육세	취득세 2%세액 × 20%, 등록면허세액 × 20%, 레저세액 × 40%, 담배소비세액 × 43.99%, 주민세액(균등분) × 25%, 자동차세액 × 30%, 재산세액(도시지역분제외) × 20%				

세 목	과세대상		세 율
재 산 세	재산세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주택 0.1, 0.15, 0.25, 0.4% 건축물 0.25% 토지 종합 : 0.2, 0.3, 0.5% 별도 : 0.2, 0.3, 0.4% 분리 : 0.07%~4%
	재산세 도시지역분	토지, 건축물, 주택	§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 0.14%
등록면허세	등록	부동산 등기	보존(0.8), 이전(1.5, 2.0), 설정(0.2)
		선박 등기	보존(0.02), 기타(건당 1만5천원)
		차량의 등록	소유권 등록(비영업용 5%, 경차 2%)
		기계장비	소유권 등록(1), 설정(0.2), 기타(1만원)
		법인등기	영리법인 : 설립(0.4), 자본증가(0.4) 비영리법인 : 설립(0.2), 출자증가(0.2)
	면허	각종 인허가 등 면허	4천5백원 ~ 6만7천5백원

| 지방세 용어의 이해 |

- ▶ **지방자치단체**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함
- ▶ **지방세**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함
- ▶ **세무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함
- ▶ **납세자**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함
- ▶ **납세의무자**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함
-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납세의무는 성립 → 확정 → 소멸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침. 첫째, 납세의무의 성립은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 등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추상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이때에는 세액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 일반적임. 둘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과세관청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지방세 납세의무의 확정방식은 신고납부(국세: 신고납세), 보통징수(국세: 부과과세), 특별징수(국세: 원천징수) 라는 3가지 방식이 있음. 셋째, 납세의무의 소멸은 조세채무의 소멸을 뜻하는데,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소멸사유로는 지방세의 납부, 충당, 부과 취소,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등이 있음
- ▶ **과세물건** 과세객체 또는 과세대상이라고도 부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등을 말함
- ▶ **과세표준** 지방세 과세대상물건(토지·건물, 자동차 등)의 가치를 구체적인 금액, 수량, 건수 등으로 계량화하여 객관적인 금액 등으로 표현한 것을 말함. 이와 같은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의 세액산출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있음
- ▶ **세율** 결정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비율(또는 금액)로서 일반적으로 1,000분율로 표시되며, 세목에 따라서 금액, 수량 등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음
- ▶ **세액** 결정된 과세표준에 법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서 실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함
- ▶ **납세고지서**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와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성명·과세표준·세율·세액·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함

- ▶ **법정신고기한**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함
- ▶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됨.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해당됨
- ▶ **보통징수** 과세관청에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함으로써 징수하는 방식을 말함
- ▶ **특별징수** 지방세에 있는 독특한 제도로서 국세에 있어서의 “원천징수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세를 징수할 때 징수에 편의를 가진 자를 지정하여 납세의무자가 내야하는 세금을 대신하여 징수하고 과세관청에 납부하여 징수의 편의도모와 납세의무자의 세금납부를 대신 하는 징수방법을 말함
- ▶ **가산세**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신고납부의무 등)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 ▶ **가산금** 부과 고지되는 지방세에 있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미납세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되는 금액(증가산금)을 말함. 이는 연체이자로서의 성격이 강함
- ▶ **체납처분**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세 대상물건 및 기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집행하고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 및 청산의 절차를 밟아 납세의무를 강제적으로 충족시키는 절차를 말함
- ▶ **체납처분비** 「지방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함
- ▶ **체납자**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를 말함
- ▶ **체납액** 체납된 지방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말함



2021
지방세 길라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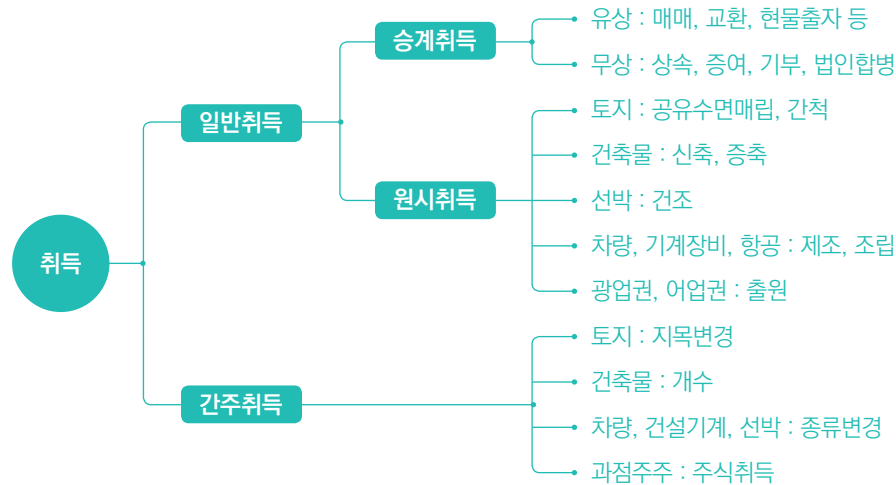
지방세 세목별 주요내용

01 취득세(舊 취득세 + 등록세¹⁾)

부동산·차량 등의 소유권 이전 등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

○ 취득의 정의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함



○ 과세대상

- 부동산(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건설기계 등),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행위
-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등(간주취득)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지방세법 제17조 제1항).

○ 납세의무자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
- 과세물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과세관청에 신고납부

※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과소납부분 또는 초과환급분 세액의 100분의 75 한도*)

* 1일 1십만원의25(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장 제1,2호, 지방세 기본법시행령 제34조)

○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취득당시의 가액

※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 그 시가표준액으로 함

• (세율)

- 부동산 유상취득의 일반세율 : 1,000분의 40(4%)
-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본점사업용 부동산 : 8%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12%
- 주택 유상거래 세율 : 1~12%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일시적 2주택 제외)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 주택유상거래 : 취득가액의 6억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1.01~2.99%, 9억 초과 3%

※ 6억 초과~9억 이하 :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x 2/3억원 - 3) x 1/100

과세표준액 150만원 마다 0.01%씩 상승

1) 구(舊) 취득세 및 등록세는 2011.1.1. 법률 제10221호(2010.3.31. 전부 개정)로 지방세목이 통·폐합되기 전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말함

취득세 세율표(일반, 중과세)

표준세율

구분			세율
부동산	상속	농지	23/1,000(2.3%)
		농지 외	28/1,000(2.8%)
	상속 외 무상취득	상속 외 무상취득	35/1,000(3.5%)
		비영리사업자 취득	28/1,000(2.8%)
	원시취득		28/1,000(2.8%)
	공유물의 분할 등의 취득		23/1,000(2.3%)
	합유·종유물의 분할 취득		23/1,000(2.3%)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농지	30/1,000(3.0%)
		농지 외	40/1,000(4.0%)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농지 외의 것에도 불구하고)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	10/1,000(1.0%)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등기·등록대상인 선박 (소형선박제외)	취득당시가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해당주택의 취득당시가액* 2/3억원-3)*1/100
		취득당시가액 9억원 초과	30/1,000(3.0%)
	소형선박	상속취득	25/1,000(2.5%)
		상속 외 무상취득	30/1,000(3.0%)
		원시취득	20.2/1,000(2.02%)
	그 밖의 선박	수입·주문건조 취득	20.2/1,000(2.02%)
		그 밖의 원인에 의한 취득	30/1,000(3.0%)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20.2/1,000(2.02%)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20.2/1,000(2.02%)
		그 밖의 선박	20/1,000(2.0%)
	차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0/1,000(7.0%)
		경자동차	40/1,000(4.0%)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20/1,000(2.0%)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승용차, 이륜자동차 외의 자동차)	비영업용 50/1,000(5.0%) 경자동차 40/1,000(4.0%)
		영업용	40/1,000(4.0%)
		위 외의 자동차	20/1,000(2.0%)

구분		세율
기계장비	기계장비	30/1,000(3.0%)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20/1,000(2.0%)
항공기	항공법 제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20/1,000(2.0%)
	그 밖의 항공기	20.2/1,000(2.02%)
	최대이륙 중량 5,700kg 이상	20.1/1,000(2.01%)
입목		20/1,000(2.0%)
광업권·어업권		20/1,000(2.0%)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20/1,000(2.0%)

중과세율 : 표준세율+가산세율(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구분	세율
①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택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 200/100)
②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 제외)에서의 법인의 설립 등 및 법인 등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대도시 부동산 취득, 대도시(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제외) 공장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	(표준세율 × 300/100) - (중과기준세율 × 200/100)
③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 400/100)
④ ①과 ②가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표준세율 × 300/100
⑤ ②와 ③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표준세율 × 300/100) + {중과기준세율 × 200/100}

○ **세율의 특례** :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 또는 중과기준세율 적용

구 분	세 율
① 형식적인 취득으로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상속으로 인한 취득(1가구 1주택의 취득,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공유물·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의 공유원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② 간주취득 등의 세율 특례 - 건물의 개수로 인한 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 토지의 지목변경, 과점주주 취득세 등	중과기준세율

참고
2

취득세 과세대상

○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하며,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 포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 **차량**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하며(지방세법 제6조 제7호), 총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제외됨(지방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 그리고 원동기의 동력원이 휘발유인지 경유인지 또는 전기인지 등은 묻지 않으며, 차량 취득세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였다면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차량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게 되면 과세한다는 점에서 등록된 자동차에 한하여 과세하는 자동차세와 다른 점임.

○ **기계장비**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8호).

○ **항공기**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9호).

○ **선박**

기선, 범선, 부선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10호).

○ **임목**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11호).

○ **광업권**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을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12호).

○ **어업권**

「수산업법」 등에 따른 어업권을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13호).

○ **골프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14호).

○ **승마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15호).

○ **콘도미니엄회원권**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16호).

○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17호).

○ **요트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18호).

구 분	취득의 시기	비 고
무상승계취득	계약일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함)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²⁾ ① 화해조서·인낙조서 ②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유상승계취득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³⁾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 :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 :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함)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① 화해조서·인낙조서 ②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차량·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수입에 따른 취득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보세구역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	
연부취득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 취득세

• 예문

- 甲은 2020년 7월에 유상거래로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그 아파트의 취득 당시 공동주택가격은 300,000,000원이고,
甲은 과세관청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28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甲이 납부할 취득세는?

• 계산

- 과세표준(A) : 300,000,000원
※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을 비교하여 높은 것을 적용합니다.

- 세율(B) : 1%
- 산출세액(A×B) : 3,000,000원

• 납부세액

- 따라서 甲은 3,000,000원의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가산세

• 예문

- 甲이 신고납부 해야 할 취득세는 3,000,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 1,500,000원만 정상적으로 신고하였고, 나머지 1,500,000원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니다(나머지 1,500,000원 중 1,000,000원은 사기·부정행위로 과소신고 되었고, 500,000원은 단순 과소신고 되었음).
甲은 부담하여야 할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 계산

- 사기·부정 과소신고분 세액의 40%(A) : 400,000원
- (과소신고분 세액·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B) : 50,000원
- 가산세(A+B) : 450,000원

• 납부 가산세

- 따라서 甲은 450,000원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 분	취득의 시기	비 고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함)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주택법」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	「주택법」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 원시취득	공사준공인가일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차량·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 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 연장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의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	

2)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정중서 등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비록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해제사실을 신고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행자부 세정과-5674, 2006.11.16.).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원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등록면허세는 취득이 수반되지 않는 각종 등기·등록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등록분'과 각종 인가·허가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면허분'으로 구분됨

○ 과세대상

- (등록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
- (면허분)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을 부여 받는 행위

※ 면허의 종류(지방세법시행령 별표1) : 총 957종, 제1종(241종), 제2종(200종), 제3종(264종), 제4종(204종), 제5종(48종)

○ 납세의무자

- (등록분) 등록을 하는 자
 - 등기·등록시에 등록분 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등록
- (면허분) 면허를 받는 자
 - 정기분 :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납기(매년 1.16.~1.31.)에 부과·징수
 - 신고분 : 면허증서 교부시 신고 납부
 - 수시분 : 무신고시 보통징수(부과·징수)

○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등록분만 해당

- 부동산·선박·항공기 등의 과세표준은 등록당시의 신고된 가액

※ 단,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일정한 채권금액이 있을 때는 채권금액

• (세 율)

- (등록분) 부동산(보전 0.8%, 이전 1.5~2.0% 등), 선박(보전 0.02%, 기타 건당 15,000원), 차량(비영업용 5%, 경차 2%) 등
- (면허분) 면허의 종별(1~5종), 지역별로 4,500원~67,500원 차등 부과등록분

○ 등록분

구 분	현행세율
부동산 등기	소유권의 보존
	소유권의 이전(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
	소유권의 이전(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지상권·저당권·전세권 등)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그 밖의 등기
선박 등기 또는 등록	소유권의 등기 또는 등록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저당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차량의 등록	소유권 등록(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권 등록(그 밖의 비영업용 차량)
	소유권 등록(그 밖의 영업용 차량)
	저당권 설정 등록 또는 이전 등록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운수업체의 등록(*운수업체의 명의를 다른 운수업체의 명의로 변경)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운수업체의 등록(*운수업체의 명의를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로 변경)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운수업체의 등록(*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를 운수업체의 명의로 변경)
	그 밖의 등록
건설기계장비	소유권 등록
	저당권 설정 또는 이전 등록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등록
	그 밖의 등록

4) 구(舊) 면허세 및 등록세는 2011.1.1. 법률 제10221호(2010.3.31. 전부 개정)로 지방세목이 통·폐합되기 전의 면허세 및 등록세를 말함

구 분		현행세율
공장·광업재단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이전 등기	1.0%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9,000원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 등기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등록	1.0%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9,000원)
법인등기	법인등기	0.4% 비영리 0.2%
	자산재평가	0.1%
	본점·주사무소 이전	건당 112,500원
	지점·분사무소 설치	건당 40,200원
	기 타	건당 40,200원
상호 등 등기	상호설정 등	건당 78,700원
	지배인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2,000원
	선박관리인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2,000원
광업권	설정	건당 135,000원
	변경(중구·증감구)	건당 66,500원
	변경(감구)	건당 15,000원
	이전(상속)	건당 26,200원
	이전(상속 외)	건당 9,000원
	기타	건당 12,000원
	조광권 등록(조광권 설정)	건당 130,500원
	조광권 이전(상속)	건당 26,200원
	조광권 이전(그 밖의 원인 이전)	건당 9,000원
	조광권 등록(그 밖의 등록)	건당 12,000원
어업권	이전(상속)	건당 6,000원
	이전(상속 외)	건당 40,200원
	지분이전(상속)	건당 3,000원
	지분이전(상속 외)	건당 21,000원
	기 타	건당 9,000원

구 분		현행세율
저작권 등	상속	건당 9,000원
	상속 외(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제외)	건당 40,200원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중 상속 외	건당 20,000원
	기 타	건당 3,000원
특허권 등	이전(상속)	건당 12,000원
	이전(상속 외)	건당 18,000원
상표·서비스	설정 및 갱신	건당 7,600원
	이전(상속)	건당 12,000원
	이전(상속 외)	건당 18,000원
항공기의 등록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상의 등록	0.01%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상 외의 등록	0.02%
기타		건당 12,000원

○ 면허분

구 분	인구 50만 명 이상 시	그 밖의 시	군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03 레저세

※ 마권세('61) → 경주·마권세('94, 경륜·경정 추가) → 레저세('02, 소싸움 경기 추가)

○ 과세대상

- 경륜 및 경정, 경마, 전통소싸움 등의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

※ 사업장 분포 : 경마(과천, 부산경남, 제주, 장외 29개소), 경륜(부산, 창원, 광명, 장외 20개소), 경정(하남, 장외 18개소), 소싸움경기(청도)

○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한국마사회(경마), 국민체육진흥공단·부산지방공단·창원경륜공단(경륜), 국민체육진흥공단(경정), 청도공영사업공사(소싸움)

○ 납부 및 납기

- 납부** : 과세대상 사업장과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납부
 - (본장) 사업장 소재지에 모두 신고납부
 - (장외발매소) 본장과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50%씩 각각 신고·납부
다만, 본장이 신설될 경우 5년간 본장 소재지에 80% 신고·납부
- 납기** : 승자·승마·전통소싸움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과표 및 세율

-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 발매금 총액의 100분의 10

※ 투표권 발매가액의 10% 부과되며,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 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

! 경마 총매출액 구성비 및 특별적립금 출연 현황 !

매출액	100%	이익금(4%)		
환급금	73%	특별적립금 (70%) ① 출산발전기금(92%) ② 공익기부금(8%)	사업확장 적립금 (20%)	이익준비금 (10%)
레저세 · 본세 10% · 교육세 4% · 농특세 2%	16%			
비용	7%			
이익금	4%			

04 담배소비세

※ '89년 방위세, 교육세, 담배판매세 등을 폐지하면서 담배소비세로 일원화

○ 담배란

-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담배사업법 제2조)

○ 과세대상 및 세율

- 담배사업법 상 담배와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부분을 원료로 하는 신종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제조자, 수입판매업자 등에게 부과

과세대상	과세단위	세율
피우는 담배	제1종 결련	20개비당 1,007원
	제2종 파이프담배	1g당 36원
	제3종 엽결련	" 103원
	제4종 각련	" 36원
	제5종 전자담배	① 니코틴용액 1mL당 628원
		② 연초 및 연초 고형물 사용 결련형 : 20개비당 897원 기타형 : 1g당 88원
제6종 물담배	1g당	715원
씹거나 머금은 담배	"	364원
냄새 맡는 담배	"	26원

※ 결련담배의 경우 담배가격과 관계없이 1갑(20개비)당 641원 부과(총량제)

담배(4,500원 기준)에 과세되는 조세·부담금 내용

담배소비세	정액	1,007원 (22.4%)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의 43.99%	443원 (9.8%)
국민건강증진기금	정액	841원 (18.7%)
폐기물부담금	정액	24원 (0.5%)
개별소비세	정액	594원 (13.2%)
부가가치세	판매가의1/11	409원 (9.1%)
조세 및 부담금 계		3,318원 (73.7%)
원가 및 이윤 등		1,182원 (26.3%)
판매가		4,500원

납부방법

- 제조자(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05 지방소비세

2010년부터 신설된 세목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세원확충 효과가 자치단체 세입으로 연결되는 지방재정의 선순환 구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소비세 과세

과세대상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납세의무자

-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
- (세율) 과세표준의 100분의 21

※ 주력유상거래 취득세를 인하(2013년)에 따른 세율 보전조치로 5% → 11%로 인상(2014년) →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15%로 인상(2019년 4%인상) → 국가보조사업 지방이양전환에 따라 21% 인상(2020년 6% 인상)

안분기준

- (지역별 소비지출에 따른 부분 5%p)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

※ 소비지수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도별 지수가 중 치 :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적용, 수도권은 100%, 광역시 200%, 도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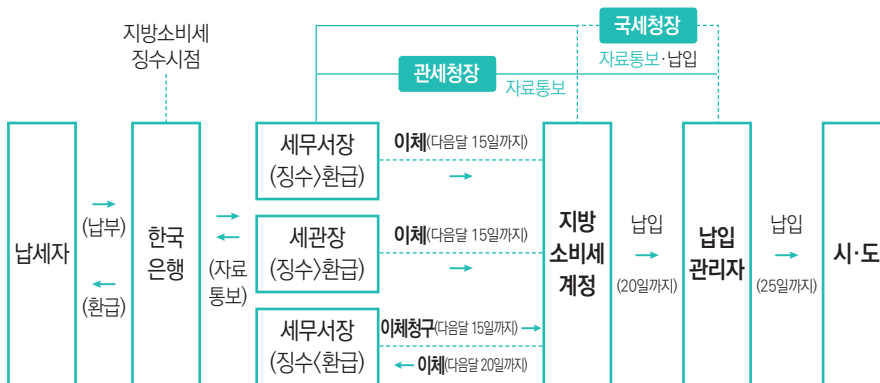
- (취득세 감소분 등에 따라 배분하는 부분 6%p) 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

- (국고보조금의 지방사업 전환과 연계한 인상분 10%p 배분 부분) 지역별 소비지출에 따른 부분(5%p) 및 취득세 감소분 등에 따라 배분하는 부분(6%p)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안분방식 규정

구 분	안분방식	납입받는자
가. 전환사업보전분(3년한시)	대통령령 (전환사업 비용보전)	지역상생발전기금
나. 기초지자체·교육청 재원변동 보전분 (3년한시)	대통령령(감소액 보전)	시장·군수·구청장, 시·도 교육감
다.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금액	대통령령 (지역별 소비지출 고려)	시·도지사

| 지방소비세 징수업무 흐름 |



06 주민세

주민세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주민세로 세목 간소화(2021) 및 주민세 납부기한을 8월로 통일

○ 납세의무자

- **(개인분)**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과세표준 및 세율

- **(개인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 : 1만원 이내(자치단체 조례로 규정) *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 **(사업소분)**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세 액
50억원 초과	20만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만원
30억원 이하	5만원
그 밖의 법인	5만원

-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세율 : 1제곱미터당 250원

* 폐수, 산업폐기물 배출 사업소는 2배 중과세, 500원

* 과세제의 면적 :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시설(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체육관, 도서관 등), 직장내 어린이집 및 오물처리시설·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등의 연면적

-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 총액의 1,000분의 5

* 조례로 표준세율의 50%범위에서 가감하는 등 탄력세율 적용 가능

○ 과세기준일 및 납기

- (개인분)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 납기 매년 8.16. ~ 8.31.
-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 신고납부 매년 8. 1. ~ 8.31.
- (종업원분) 매월 납부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07 지방소득세

종전의 지방소득세가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과세 형태로 부과, 징수되어 왔던 것을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확충목적으로 독립세의 방식으로 전환

○ 과세대상 : 개인지방소득과 법인지방소득으로 구분

- 개인지방소득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법인지방소득 : 각 사업연도소득, 청산소득*,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재산의 자산가치 증가액에 과세

○ 납세의무자

-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구 분	거주자(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자), 내국법인	비거주자, 외국법인
과세범위	국내·외 원천소득	국내 원천소득

○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 개인지방소득세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소득세법」 제5조)
- 법인지방소득세 : 법령·정관 상 1년 이내의 1 회계기간 (「법인세법」 제6조)

※ 1회계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함

○ 과세표준 및 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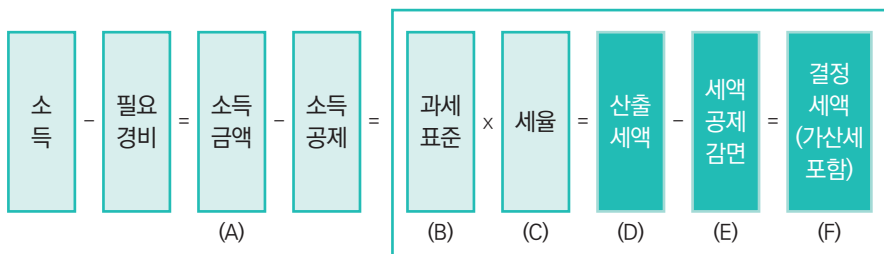
과세표준		소득세·법인세법 상 과세표준과 동일	
세율	개인분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0.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 ~ 1억5천만원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법인분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천7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천84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200억원 초과 ~ 3천억원 이하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특별징수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탄력세율	자자체별로 세율의 50% 가감 적용	

※ 2021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부터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이 신설되어 최고세율이 현행 42%에서 45%로 상향 적용

과세구조

지방소득세 과세구조



* (~13년) 국세 부가세 형식 : 결정세액(F) × 10% = 지방소득세

* (14년 이후) 독립세 전환 : 과세표준(B) × 지방소득세율(C) - 공제·감면(E) = 지방소득세

납세지(해당 특·광역시, 시·군)

- (개인)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특별징수 납세지는 종류별로 따로 규정

소득종류별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

구 분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납세지	근무지	소득 지급지	주소지	근무지

- (법인) 각 사업장 소재지(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1:1 기준 안분)
 -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함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식

$$\left[\left(\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수}} \right) + \left(\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right) \right] \div 2$$

납부(징수)방법

- (신고납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종합소득은 전국 지자체 가능, 무관할)

개인	근로소득	· 매월 특별징수(원천징수) 후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
	양도소득	· (예정신고 납부)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 (확정신고 납부)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
법인	사업연도소득 등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법인세는 3개월) 이내 신고·납부
	청산소득	· 해산 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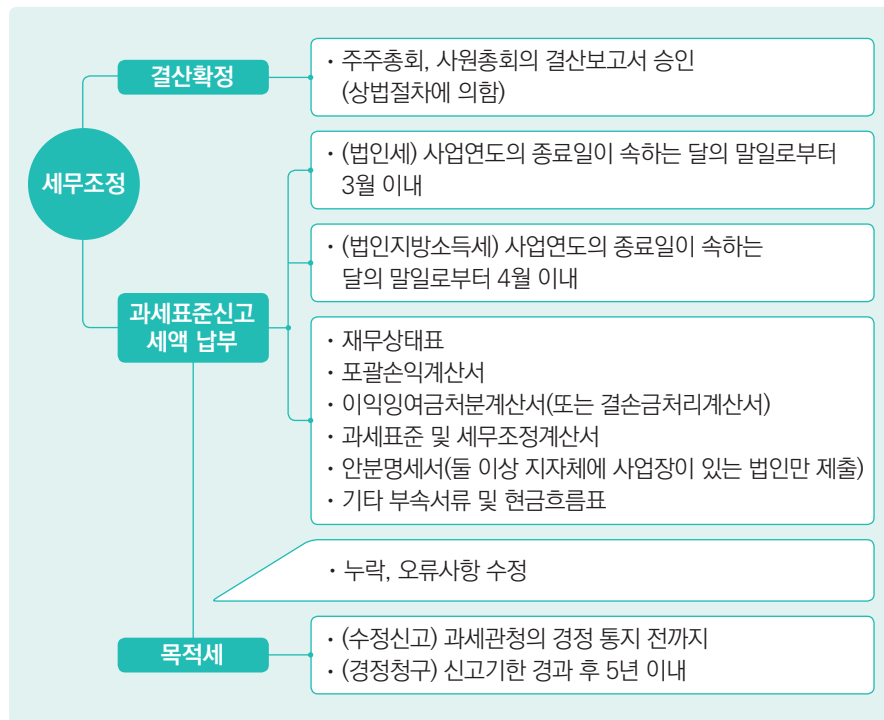
- (특별징수) 원천징수의무자(임금, 이자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관할 지자체에 납부(기준과 동일)
 - 징수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결정·경정) 관할 지자체에서 결정·경정·수시부과

※ (2020년 개정)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무관할 신고 접수제도를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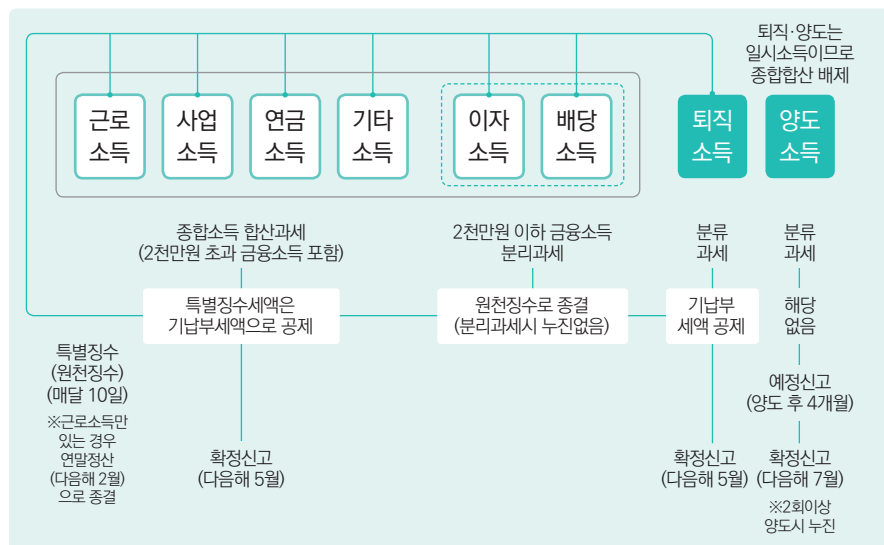
※ 무관할 신고제도 도입 :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가 시행되는 2020년부터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관계없이 전국 지자체에서 신고·경정청구 가능

○ 납부체계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절차 |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징수) 체계 |



08 재산세(舊 도시계획세⁵⁾)

○ 과세대상 :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

- (토지)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축물)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 일반 건축물
- (주택) 부속토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 (기타) 항공기, 선박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1일) 현재 당해 재산의 소유자

구분	내용
원칙적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자 •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봄)
예외적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 공부상 소유자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 주된 상속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 그 매수 계약자 •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 : 사업시행자 /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 수입하는 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그 사용자

5) 구(舊) 도시계획세는 2011.1.1. 법률 제10221호(2010.3.31. 전부 개정)로 지방세목이 통·폐합되기 전의 도시계획세를 말함.

○ 세액산출 구조

Ⅰ 계산방식 Ⅰ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

- 공정시장가액 비율 : 주택 60%, 토지·건축물 70%

※ 공정시장가액 비율 :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

• 세율

- (주택) 0.1%~0.4% /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0.5%, 기타 0.25%
- (토지) 종합합산 0.2%~0.5%, 별도합산 0.2%~0.4%, 분리과세(전·답·과수원 등 0.07%, 골프장·고급오락장 4%, 그 밖의 토지 0.2%)

• 세부담 상한 :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

* 주택 (3억원 이하) 105%, (3억 초과~6억원) 110%, (6억원 초과~) 130% / 토지·건물 : 150%

Ⅰ 토지분 재산세 과세구분 Ⅰ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 별도·분리과세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 무허가건물 부속토지 제외 • 별도합산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업용 토지 등 - 자동차운송사업용, 운동시설용, 부설주차장용, 유통시설용, 원형보전임야 등 17건	〈저율 분리과세 (0.07%)〉 • 농지(도시지역 내 농지는 제외) • 특정 임야(보전산지 내 등) 〈일반 분리과세 (0.2%)〉 • 읍·면·산업단지 소재 공장용 토지 • LH·전기·가스·수자원공사의 사업용 토지 등 공익적성격의 토지 30여건 〈고율 분리과세 (4%)〉 • 고급오락장, 회원제 골프장 등
• 세율 0.2~0.5% • 공시가격 5억 초과는 중부세 과세	• 세율 0.2~0.4% • 공시가격 80억 초과는 중부세 과세	• 세율 0.07%~4% • 중부세 제외

○ 납기

과세대상	납기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	$\frac{1}{2}$ 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frac{1}{2}$ 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연세액 20만원 이하의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음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물납 및 분납

구분	대상 및 납부방법
물납	• (대상)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 ※ 재산세에 병기 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제외 • (방법) 재산세 납기 10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 물납신청 • (물납대상자산)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내의 부동산
분납	• (대상)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 ※ 재산세에 병기 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제외 • (방법)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 분납신청 •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

• 재산세 도시지역분(舊 도시계획세) : 주택, 토지, 건축물(0.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 부동산

•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 주택, 건축물(0.04%~0.12%)

• 지방교육세 : 재산세 세액의 20%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분리과세대상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시(읍·면 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주택

- 별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선박

- 고급선박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 그 밖의 선박 :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항공기 :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자동차의 소유와 주행에 대하여 과세하는 시세로서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 교통혼잡 유발 및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후불제적 세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납세의무자 :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

※ 소유자 사망시에는 민법상 상속자분이 가장 높은 자 또는 연장자 순으로 납세의무 부여

○ 과표 및 세율

- 승용자동차 : 배기량(cc) 기준 차등과세

일반 승용자동차(배기량)				기타승용차(전기차 등)	
영업용		비영업용		영업용	비영업용
1,000cc이하	cc당 18원	1,000cc이하	cc당 80원	2만원	10만원
1,600cc이하	cc당 18원				
2,000cc이하	cc당 19원	1,600cc이하	cc당 140원		
2,500cc이하	cc당 19원				
2,500cc초과	cc당 24원	1,600cc초과	cc당 200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

-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

- (승합차) 자동차 종류별 영업용 2.5~10만원, 비영업용 6.5~11.5만원

- (화물차) 적재용량별 영업용 6,600~45,000원, 비영업용 28,500~157,500원
- (특수자동차) 영업용(소형 13,500원, 대형 36,000원), 비영업용(소형 58,500원, 대형 157,500원)
-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 3,300원, 비영업용 18,000원

○ 부과·징수방법

-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6월1일과 12월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

* 年 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잔여기간의 자동차세 10%의 범위에서 세액 공제 (2021년부터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적용 세액 공제)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주행세)

○ 개요

- 국가정책('98년 한미 자동차 협상 등)에 따른 자동차세 감소분 보전*을 목적으로 '00년 신설(舊 주행세)

※ '99년 한미자동차협상 2,900억원, '01년 자동차등록면허세 폐지 2,000억원, 중고차감면제도 3,342억원, '03년 경차 취·등록세면제 200억원 및 한미FTA 관련 자동차세율 인하 1,388억원

- '01년 유류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재원 포함

○ 납세의무자

-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 있는 자

※ 정유회사(5개사: SK, GS, 한화, 에스오일, 현대) 및 유류수입자

○ 과세표준 및 세율

-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6%

※ 세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할 경우 그 세율의 3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6) 구(舊) 자동차세 및 주행세는 2011.1.1. 법률 제10221호(2010.3.31. 전부 개정)로 지방세목이 통·폐합되기 전의 자동차세 및 주행세를 말함

○ 부과·징수방법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징수의무자)는 다음달 25일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자동차세의 징수세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10 지역자원시설세

○ 개요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

○ 과세대상

- (특정자원·시설분)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소방분)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 포함)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 제외)

○ 과세표준 및 세율

- (특정자원·시설분)

구 분	발전용수	원자력	화력발전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세율 /과표	2원/10m³	1원/kWh	0.3원/kWh	· 음용수 : 200원/m³ · 목욕용 : 100원/m³ · 기 타 : 20원/m³	채취가액의 0.5%	1만5천원 /TEU

- (소방분) 재산가액의 0.04~0.12%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0.0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0.0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0.10%
6,400만원 이하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 ① 저유장·주유소·정유소·유흥장·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비주거용 건축물 등 일반세율의 2배 중과세
 ② 대형마트·복합상영관·백화점·호텔 및 11층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3배 중과세
 ③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총당하는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0.0023%

○ 부과·징수방법

-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

11

지방교육세

※ '00.12.29. 지방교육세 신설, '01.1.1 시행

○ 개요

-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취득세 등에 추가하는 목적세

○ 납세의무자

- 취득세(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 등록분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 및 세율

- 취득세액(종전 등록세분 세액만 해당)의 100분의 20
- 등록분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 주민세 개인분 세액 및 사업소분 세액의 각 100분의 10(인구 50만 이상 시는 100분의 25)
- 재산세액(도시지역분 제외)의 100분의 20
-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 담배소비세의 10,000분의 4,399

○ 부과·징수방법

- **신고납부**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
- **부과징수** : 주민세 개인분,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거나 세관장이 담배 소비세를 부과·징수하는 때

2021
지방세 길라잡이



2021
지방세 길라잡이

유용한 세금 정보

01 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는 지방세기본법에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심판청구제도 등이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도 있음. 다만, 취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거친 후에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음.

| 지방세 구제제도의 개요 |

구 분		심리·의결	결정
과세 前	과세전 적부심사	지방세 심의위원회 (*절차생략가능)	시·군·구세 : 시장·군수·구청장 도세 : 도지사
	이의신청	"	"
과세 後	심사청구	" ※ 도세 : 없음	시·군·구세 : 도지사
	심판청구(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 회의	조세심판관
	심사청구(감사원)	감사위원회의	감사원
	행정소송	판사	판사

* 사유: ①각각결정사유 해당, ②청구금액 1백만원이하, 유사 인용결정사유가 있는 경우 등

○ 과세전적부심사(지방세기본법 제88조)

-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써,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음

○ 이의신청(지방세기본법 제90조)

- (2021.1.1. 시행)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 포함)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군·구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 포함)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포함]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

○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지방세기본법 제91조)

- (2021.1.1. 시행)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

○ 감사원 심사청구(감사원법 제43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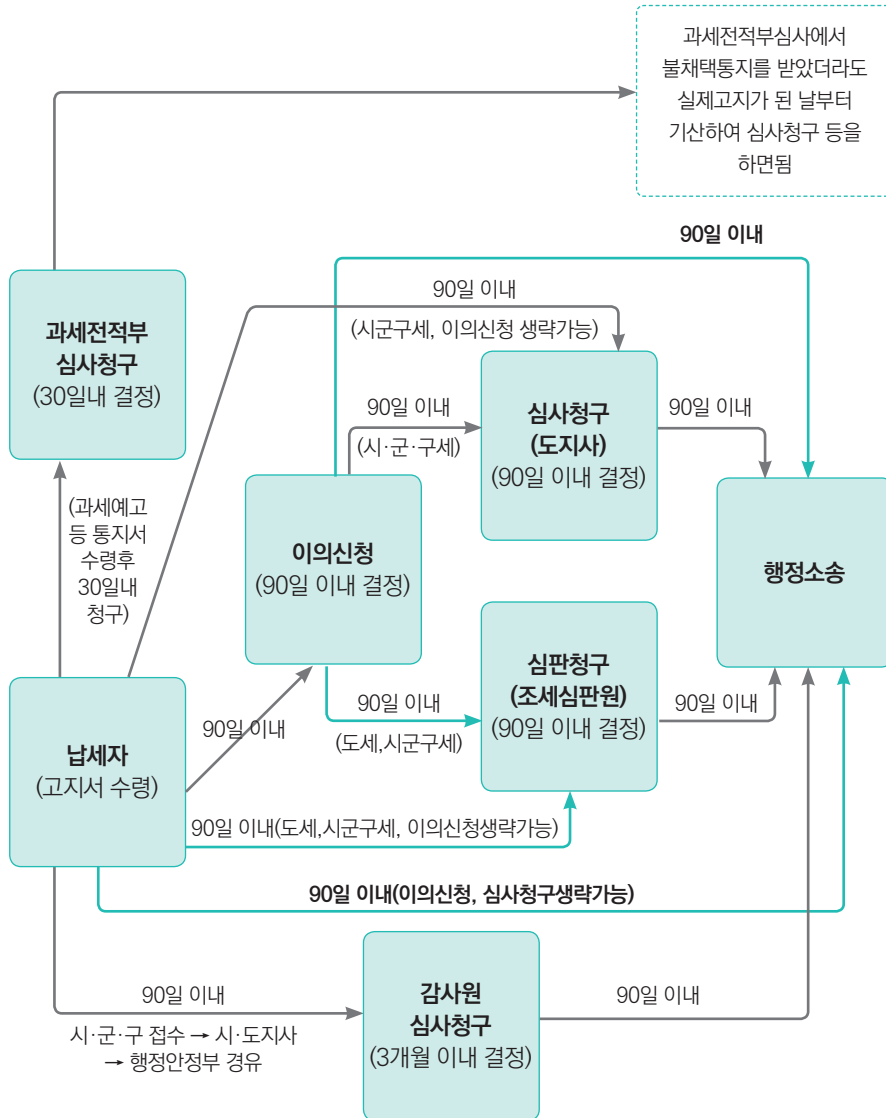
-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음
-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함.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와의 관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가 중복 제기된 경우에는 감사원 심사청구가 취하되지 않으면 불복신청은 각하됨.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기간 내에 제기된 불복청구를 처리함(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117-4, 123-1).

○ 행정소송

-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친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2021년부터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



02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이의 잘못이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 후 신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수정신고(지방세기본법 제49조)

○ 의미

-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수정신고'라 함

○ 요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 효과

- 적법·유효한 수정신고가 있으면 수정신고 한 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되며,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됨.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되지 않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비 고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1년 이내: 30% 1년초과~1년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2년 이내: 10%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20%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50%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 및 수정신고를 한 경우: 50%

경정청구(지방세기본법 제50조)

○ 의미

-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납기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경정청구'라 함

○ 요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 효과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함.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기한 후 신고(지방세기본법 제51조)

○ 의미 및 요건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후 신고'라 함.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효과

- 기한 후 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기한 후 신고 한 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비로소 그 때 세액이 확정됨.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 제도 실시

| 수정신고·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비교 |

구분(효과)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세액의 확정력	○	×	×
가산세의 감면	1개월 이내: 90% 감면 2개월~3개월 이내: 75% 감면 3개월~6개월: 50% 감면 6개월~1년 이내: 30% 감면 1년~1년6개월 이내: 20% 감면 1년6개월~2년 이내: 10% 감면	-	2개월~3개월 이내: 30% 감면 4개월~6개월 이내: 20% 감면

지방세는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액 납세자 등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분납 및 물납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세 분납

○ 재산세(지방세법 제118조)

- (포함세목)재산세는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는데, 이 중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지방세법기본통칙 118-1 1 ②)는 분납범위에 포함되나 지역자원시설세는 포함되지 않음
- (분납기준 및 방법)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이 분할납부 세액이 됨. 분할납부는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분할납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할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함
- (효과) 재산세를 분납처리 함에 있어서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회수하며, 기고지한 부과결정을 조정 결정하게 되며, 따라서, 가산금이 가산되지 아니하며, 징수권 소멸시효도 진행되지 않음

○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28조)

-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본세액)을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함.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본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음.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지방세 물납(지방세법 제117조)

○ 물납세목

- 지방세를 물납할 수 있는 세목은 재산세가 유일함. 재산세와 함께 고지되는 것 중에서 도시지역분은 물납이 가능하나,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물납이 불가함

○ 물납기준 및 방법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이 허용됨

○ 물납절차

-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물납 허가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 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함. 이때 시가는 원칙적으로 토지 및 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

표준액이 됨. 다만,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중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수용·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0조에서 정하는 다음의 것도 시가로 봄

- 해당 부동산의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말함)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취득으로서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있는 경우 : 그 취득가격
-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함

○ 물납의 효과

-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함.

지방세가 납부기한 이내에 완납되지 않고 체납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재가 뒤따를 수 있사오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지방세 체납시 제재의 종류

연번	제재의 내용	법적 근거
1	납부 독촉(최고)	지방세징수법 제32조
2	가산금 및 증가산금 부과	지방세징수법 제30조, 제31조
3	체납처분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내지 39조
4	출국금지	지방세징수법 제8조
5	관허사업의 제한	지방세징수법 제7조
6	명단 공개	지방세징수법 제11조
7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지방세징수법 제9조
8	[자동차세 체납에 한함]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자동차등록증 발급 거부	지방세법 제131조

납세자는 지방세징수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방세의 체납이 없다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념

-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임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5조의2(징수유예 등), 제26조(부과철회) 및 제105조(체납처분유예)에 따른 유예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와 관련된 체납액

○ 제출사유(지방세징수법 제5조) ※시행일 2020.4.30.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 유효기간

-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간임.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정 납부기한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신고납부하거나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지방세는 제외)가 있는 때에는 그 유효기간을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음.

IV

2021
지방세 길라잡이

중과세와 비과세·감면제도

지방세에서는 일반과세보다 더 무겁게 과세되는 중과세 제도가 있으며, 세목별·유형별로 지방세의 중과세 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적기초 (②)	세목별 분류(①)					중과지역별 분류(③)			비 고
	취득세	등 록 면허세 (등록분)	재산세	사업소분 주민세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대도시 내	특·광역시 특정지역	지역구분 없음	
사치성재산	○		○					✓	지법 13 ⑤ / 111 ①
법인본점용 부동산	○					✓			지법 13 ①
법인 등기		○				✓			지법 28 ②
법인부동산 등기		○				✓			지법 13 ②
공장 신·증설	○	○	○			✓			지법 13 ① / 13 ② / 111 ②
공장용 건축물			○				✓		지법 111 ①
화재위험 건축물					○			✓	지법 146 ③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				✓	지법 81 ①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법상의 비과세·감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및 과세면제

세목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해당 조항
취득세	비과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득	취득세	9 ①
		기부채납 조건부 부동산 취득 등	취득세	9 ②
		신탁재산의 취득(신탁등기 병행)	취득세	9 ③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세	9 ④
		존속기간 1년 이하 임시건축물 취득	취득세	9 ⑤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취득세	9 ⑥
		상속개시이전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	취득세	9 ⑦
등록 면허세	비과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	등록면허세	26 ①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등록면허세	26 ② 1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등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 등록	등록면허세	26 ② 2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의 등록	등록면허세	26 ② 3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	등록면허세	26 ② 4
담배 소비세	과세면제	수출용 담배	담배소비세	54 ① 1
		주한외국군의 군인에 판매하는 담배	담배소비세	54 ① 2
		보세구역에서의 판매용 담배	담배소비세	54 ① 3
		외항선 등의 선원에 대한 판매용 담배	담배소비세	54 ① 4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용 담배	담배소비세	54 ① 5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담배	담배소비세	54 ① 6
		북한지역 취업근로자 등 판매용	담배소비세	54 ① 7

세목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해당 조항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 등이 반입하는 담배(결련 200개비 한)	담배소비세	54 ②
		수출담배가 불량 등으로 다시 수입되어 담배보관소 반입을 위한 반출	담배소비세	54 ③
주민세	비과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주민세	77 ① 1
		주한외국정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주민세	77 ① 2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주민세 개인분	75 ① 1(가)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주민세 개인분	75 ① 1(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	주민세 개인분	75 ① 1(다)
		외국인(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등록 1년 미경과)	주민세 개인분	75 ① 1(라)
		해당 사업소 연면적이 330㎡이하(면세점)	주민세 사업소분	82
		해당 사업소 급여종액의 월 평균값이 1억 5,000만원 이하(면세점)	주민세 종업원분	82의4
지방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	지방소득세	90
재산세	비과세	국가 등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	재산세	109 ①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 소유 재산	재산세	109 ①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유료사용은 부과)	재산세	109 ②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재산세	109 ③ 1
		산림보호구역,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재산세	109 ③ 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인 임시사용 건축물	재산세	109 ③ 3
		비상재해구조용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재산세	109 ③ 4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	재산세	109 ③ 5
자동차세	비과세	국가 등이 소방 등에 제공하는 자동차	자동차세	126 1
		국가 등이 환자수송용 등에 제공하는 자동차	자동차세	126 2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자동차세	126 3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국가 등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145 ① 1
		국가 등에 무료로 제공하는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145 ① 2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145 ②

○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 범례 : (취) 취득세, (등) 등등록면허세, (주개) 주민세 개인분, (주사) 주민세 사업소분, (주종) 주민세 종업원분, (지소) 지방소득세, (재) 재산세, (재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자) 자동차세, (지역) 지역자원시설세

규 정	주 요 내 용	세 목 별										일몰 기한 (까지)
		취	등	주개	주사	주종	지소	재	재도	자	지역	
§6①	자경농민 농지 등에 대한 감면	50										23년
§6②	자경농민 취득 농업용 건축 물 등 감면	50										23년
§6③	자경농민 경작용 하천점용 면허 등 감면		100									21년
§6④	귀농인에 대한 감면	50										21년
§7①	자동경운기 등 농기계류에 대한 감면	100										23년
§7②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 시설 감면	100						100				23년
§8①	개간농지 등에 대한 감면	100										22년
§8②	교환·분합 농지에 대한 감면	100										22년
§8③	임업 후계자 교환·분합 임야 감면	100										22년
§8③	임업후계자의 보전산지(99 만㎡) 임야 감면	50										22년
§8④	공유수면 매립·간척에 따른 감면	0.8%										21년
§9①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50										23년
§9②	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감면	100						100			100	22년
§9③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감면	100										22년
§9③	어업권에 관한 면허에 대한 감면		100									22년
§10①	농어업인 등에 대한 용자담 보물 감면		50									21년
§10②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부동산 감면				100	100						21년
§11①	농업법인 영농 부동산 대한 감면	75										23년
§11②	농업법인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감면	50						50				23년
§11④	농업법인의 설립등기 감면		100									20년 (종료)
§12①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50						50				23년

규 정	주 요 내 용	세 목 별										일몰 기한 (까지)
		취	등	주개	주사	주종	지소	재	재도	자	지역	
§12②	어업법인의 설립등기 감면		100									20년 (종료)
§13②1	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 용 부동산 감면	50						50				22년
§13②1의2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 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 감면	50 50						100 50				21년 22년
§13②2	농어촌공사의 취득(환매)용 부동산 감면(화생농민의 농지 환매취득시 면제 연장)	50 (100)						50				22년
§13②3	농어촌공사 FTA 관련 취득 농지 감면	50										22년
§13②4	농어촌공사 제3자 공급용 일시취득 감면	25										22년
§13②5	농어촌공사 농지기금용 취득 농지 감면	50										22년
§13③	농어촌공사 국가 등 무상귀속 부동산 감면							100	100			21년
§14①	농업협동조합 등 구판용 부동산(중앙회)	25						25				23년
§14③	농협 등 고유업무용 부동산 감면	100						100				23년
§15①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감면	50						50				22년
§15②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감면	100	100					100				22년
§16	농촌주택개량사업 주택 감면	100 (280만원 한도)										21년
§17①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100								100		21년
§17의2	한센인 지원을 위한 감면	100						100	100		100	21년
§1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25						25				22년
§19	영유아어린이집 등에 대한 감면	100						100	100			21년
§19의2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100						100	100			23년
§20 1	노인복지시설(무료)에 대한 감면	100						50				23년
§20 1	경로당 등에 대한 감면	100						100	100		100	23년
§20 2	노인복지시설(유료)에 대한 감면	25						25				23년

규 정	주 요 내 용	세 목 별										일몰 기한 (까지)
		취	등	주개	주사	주종	지소	재	재도	자	지역	
§21①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75						100				23년
§21②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감면	100						50				23년
§22①~③, ⑤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2년
§22⑥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감면	30										21년
§22의2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한 감면	100 (140만원 한도)										21년
§22의4	사회적기업 감면	50	50					25				21년
§23①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법인 고유업무 부동산 감면	100 50 25						100 50 25	100			20년 21년 22년
§23②	한국소비자원 고유업무 부동산 감면	100 50 25						100 50 25	100			20년 21년 22년
§26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100						100				21년
§27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감면	25 25						25				20년 21~ 22년
§27②	산재의료병원에 대한 감면	75 50						50 50 (5년간)				20년 21년
§28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한 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면	25						25				22년
§28③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면	25										22년
§29①1	국가유공자 대부금 용자용 부동산 감면	100										23년
§29②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감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3년
§29③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부동산 감면	100						100	100		100	23년
§29④	국가유공자 보철용 자동차 감면	100								100		21년
§30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25						25				22년
§30②	보훈병원 감면	50						50 (5년간)				21년
§30③	독립기념관에 대한 감면	100			100			100	100			21년

규 정	주 요 내 용	세 목 별										일몰 기한 (까지)
		취	등	주개	주사	주중	지소	재	재도	자	지역	
§31①1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60㎡이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및 최초 분양받은 경우	100										21년
§31①2	건설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 목적으로 60㎡초과 85㎡ 이하인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는 경우	50										21년
§31②1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60㎡이하 공동 주택을 최초 분양받은 경우	100										21년
§31②2	20호 이상 자기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0										21년
§31④1	임대사업자가 40㎡이하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 주택을 건축, 매입하여 임대 하는 경우							100	100			21년
§31④2	임대사업자가 60㎡이하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50	50			21년
§31④3	임대사업자가 85㎡이하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 주택을 건축, 매입하여 임대 하는 경우							25				21년
§31⑥	한국토지주택공사 보금자리 주택 감면	50						50				21년
§31의3①_1	기업형임대, 준공공임대 (전용40㎡ 이하)							100	100			21년
§31의3①_2	기업형임대, 준공공임대 (전용60㎡ 이하)							75	75			21년
§31의3①_3	기업형임대, 준공공임대 (전용85㎡ 이하)							50				21년
§31의4①, ②-1	공공임대리초주택 감면 (전용60㎡ 이하)	20 (중과제외)						40				21년
§31의4①, ②-2	공공임대리초주택 감면 (전용85㎡ 이하)	20 (중과제외)						15				21년
§32①	LH공사 소규모공동주택 (60㎡) 감면	50						50				21년
§32의2	한국토지주택공사 방치건축물 사업재개	35						25				21년
33②	서민주택 (1억 미만, 40㎡ 이하) 감면	100										21년

규 정	주 요 내 용	세 목 별										일몰 기한 (까지)
		취	등	주개	주사	주중	지소	재	재도	자	지역	
§35①	주택담보 노후 연금주택에 대한 감면		75 (300만원 한도)									21년
§35②	주택담보 노후 연금주택에 대한 감면							25				21년
§35③	민간 금융기관 역모기지 가입주택 감면							25				21년
§35의2	농지연금 대상 담보 농지에 대한 감면							100				21년
§36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 연합회 감면	100						100	100			21년
§36조의2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흥부부에 대한 감면	50										20년 (종료)
§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50										21년
§37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75 50						75 50 (5년간)	75			20년 (종료) 21년
§38①	의료법인 감면	50 30						50 50 (5년간)	50			20년 21년
§38④	종교단체 의료병원 감면	20~40 30						50 50 (5년간)	50			20년 21년
§38의2	지방의료원 감면	75 75						75 75 (5년간)				20년 21년
§40	국민건강 증진사업자 감면	75 50						75 50 (5년간)	75			20년 (종료) 21년
§40의3_2	대한적십자사 의료 사업 부동산 감면 (21.1.1.~21.12.31. 취득)	50						50 (5년간)				21년
§40의3_3	대한적십자사 의료사업 외 부동산 감면	25						25				22년
§41①~⑤	학교 등에 대한 감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1년
§41⑦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감면	50 30						50 50 (5년간)	50			20년 21년
§42①	행복기숙사(민자기숙사 제외)에 대한 감면	100			100			100				21년

규 정	주 요 내 용	세 목 별										일물 기한 (까지)
		취	등	주개	주사	주중	지소	재	재도	자	지역	
§42②	학교가 학생의 실험·실습용으로 취득하는 차량, 기계설비 등에 대한 감면	100						100				21년
§42③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면	75						75				23년
§43①~③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감면	100 50						100 50 (5년간)				19년 (종료) 21년
§44①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100 50						100 50 (5년간)				19년 21년
§44②	전공대학에 대한 감면	100						100				21년
§44③	직업훈련시설에 대한 감면	50						50				21년
§44의2	박물관 등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100						100	100			21년
§45①	학술단체의 학술연구사업에 대한 감면	100						100				21년
§45②-1	장학법인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100						100				21년
§45②-2	장학금 지급 목적의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80						80				21년
§45의2	기초과학연구기관등에 대한 감면	100						100				23년
§46①	중견기업의 기업 부설연구소(과밀억제권 내 대기업 제외) 감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35 (45)						35 (45)				22년
§46②	과밀억제권역 외 대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35 (45*)						35 (45)				22년
§46③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60 (70)						50 (60)				22년
§47	한국환경공단 등의 직접사업에 대한 감면	25						25				22년
§47의2①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3~10										23년
§47의2②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감면	15~20										23년

규 정	주 요 내 용	세 목 별										일물 기한 (까지)
		취	등	주개	주사	주중	지소	재	재도	자	지역	
§47의2③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감면	10										23년
§47의4①	내진성능확보 건축물의 신축 감면 내진성능확보 건축물의 대수선 감면	50 100						50 (5년간) 100 (5년간)				21년
§47의4③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5~10 시행령5%										21년
§48	국립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감면	25						25				22년
§49	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25						25				22년
§49의2	5G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감면		50									23년
§50①~⑥	종교단체 및 향교에 대한 면제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51	신문·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50	50						21년
§52①	문화예술 단체 등에 대한 감면	100						100				21년
§52②	체육진흥단체 감면	100						100				21년
§53	국민신탁법인에 대한 감면	100						100	100		100	21년
§54①	관광단지 등에 대한 감면	25										22년
§54⑥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관련시설 감면	100						(중과 제외)				(취) 17년 (재) 22년
§55①	문화재에 대한 감면 (사적지)							100	100			
§55②-1	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내 부동산)							100 (50)	100 (50)			
§55②-2	등록문화재							50				
§56③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50						50				22년
§57의2①	법인합병(서비스업종 제외) (중소기업 간 합병 등)	50 (60)										21년
§57의2②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간 일반합병	100	50									21년
§57의2③ 1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물출자	25										21년
§57의2③ 2	적격분할재산법인 (법인세법§46②)	75										21년

규 정	주 요 내 용	세 목 별										일몰 기한 (까지)
		취	등	주개	주사	주종	지소	재	재도	자	지역	
§57의2③ 3	현물출자 재산 (법인세법§47-2)	75										21년
§57의2③ 4	자산교환법인 (법인세법§50)	75										21년
§57의2③ 5	중소기업간의 합병	75										21년
§57의2③ 7	특별법 개정 등 상법상 주식회사 변경	100										21년
§57의2④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사업용고정자산)	75										21년
§57의2⑤ 1	과점주주(부실기관 주식 등 취득)	100										21년
§57의2⑤ 2	과점주주(금융기관 대출금취 득 주식 취득)	100										21년
§57의2⑤ 3	과점주주(지주회사 등이 자회사 주식 취득)	100										21년
§57의2⑤ 4	과점주주(예금보험공사 등이 정리금융기관 주식 취득)	100										21년
§57의2⑤ 5	과점주주(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 추심으로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시 주식취득)	100										21년
§57의2⑤ 6	과점주주(농협자산관리회사 가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 전환하여 주식 취득)	100										21년
§57의2⑤ 7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으로 주식 취득	100										21년
§57의2⑤ 8	과점주주(코스닥 상장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100										21년
§57의2⑧	사업재편계획에 의한 합병		50									21년
§57의2⑩	금융회사 간의 합병	50	50									21년
§57의3① 1	자산관리공사 등이 부실금융 기관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	100										21년
§57의3① 2,3	부실농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	100										21년
§57의3① 4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	100										21년
§57의3① 5	부실신협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	100										21년
§57의3① 6	부실새마을금고로부터 양수하는 재산	100										21년

규 정	주 요 내 용	세 목 별										일몰 기한 (까지)
		취	등	주개	주사	주종	지소	재	재도	자	지역	
§57의3②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중소기 업 회생을 위해 취득하는 재산	100										21년
§57의3③	자산관리공사가 구조개선 중소기업보유자산 취득	50										23년
§57의3④	자산관리공사가 임대조건부 중소기업자산 취득							50 (5년)				23년
§57의4	자산관리공사 주택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에 대한 감면	50						50 (5년)				23년
§58①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감면	50						50				23년
§58②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 입주 기업 감면	중과 제외	중과 제외					중과 제외				23년
§58③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50						50 (3년)				23년
§58④	벤처기업육성특진지구에 대한 감면	37.5						37.5				22년
§58의2①	지식산업센터 사업시행자 감면	35						37.5				22년
§58의2②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감면	50						37.5				22년
§58의 3	창업중소기업 부동산에 대한 감면	75						100 (3년) 50 (2년)				23년
§59①	중소기업진흥공단 교육시설용 부동산	25										22년
§59②	중소기업진흥공단 분양· 임대용 부동산	50						50				22년
§59③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부동산	50						50 (3년)				22년
§60①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감면 (전통시장 상인 협동조합)	50 (75)										22년
§60②	중소기업중앙회 신축 건축물 세율특례	2%										22년
§60③1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한 감면	75						50				23년
§60③1의2	학교 내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대한 감면	75						100	100			23년
§60③2	창업보육센터(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경우 포함) 입주자 에 대한 감면	중과 제외	중과 제외					중과 제외				23년
§60④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50						50				22년
§62①	광업자원(광업권 설정) 감면		100									21년

규 정	주 요 내 용	세 목 별										일몰 기한 (까지)
		취	등	주개	주사	주종	지소	재	재도	자	지역	
§62②	광업지원(광업권 출원, 지상 임목) 감면	100										21년
§63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감면	25										22년
§63②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감면 (철도차량, 국가귀속)	100						100	100			22년
§63③	한국철도공사 사업용 부동산 감면 한국철도공사 철도차량 감면 (고속철도)	25 50 (25)						50	50			22년
§63④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 감면	100	100									
§63⑤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감면	100 (조례)	100 (조례)					100 (조례)	100 (조례)			22년
§64①	국제선박 등록 지원을 위한 감면	△2% (세율)						50				21년
§64②	연안화물운송용 선박 등에 대한 감면	△1% (세율)						50				21년
§64③	LNG 천연가스 선박에 대한 감면	△2% (세율)										21년
§64의2	e-Nav 단말기 무선국 개설에 대한 감면		100									23년
§65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감면	△1.2% (세율)						50 (5년)				21년
§66①②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100	100									-
§66③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감면	100 (40만원 한도)										21년
§66④	전기·수소차에 대한 세액공제	100 (140만원 한도)										21년
§67①	경형 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100 (50만원 한도)										21년
§67②	10인승 이하 승합, 화물차 감면	100										21년
§67③	7~10인승 전방조종자동차 감면									소형 일반 버스 세율		21년
§68①4	매매용 및 수출용중고차 등 감면	100								100		21년

규 정	주 요 내 용	세 목 별										일몰 기한 (까지)
		취	등	주개	주사	주종	지소	재	재도	자	지역	
§68③	대외 무역용 중고선박 등 감면 수출용 중고자동차 감면	△2% (세율) 100										21년
§69	교통안전관리공단에 대한 감면	25										22년
§70①	운송사업자에 대한 감면	50										21년
§70③	시내(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천연가스 버스 감면	75										21년
§70④	시내(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전기 및 수소 버스 감면	100										21년
§71①	물류단지 사업시행자 감면	35						35				22년
§71②	물류단지 입주기업 감면	50						35 (5년간)				22년
§71③	복합물류 터미널사업 시행자 감면	25						25				22년
§72①②	별정우체국에 대한 감면	△2%			100	100		100	100			22년
§73①	토지수용 등 대체취득 감면	100										
§73③	환매권행사로 인한 취득	100										
§73의2	반대급부 있는 기부채납용 부동산 감면	100 50										20년 21년
§74①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100										22년
§74③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	75										22년
§74④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지조성용 취득 주택 및체비지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75 100										22년
§74⑤1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50										22년
§74⑤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50										22년
§74⑤3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재개발사업 주택 취득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60제곱미터 초과 80제곱미터 이하)	75* 50**										22년

규 정	주 요 내 용	세 목 별										일몰 기한 (까지)
		취	등	주개	주사	주중	지소	재	재도	자	지역	
§75의2①1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사업장 감면 *종전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1년 유예	50 (조례)						50 (조례)				22년
§75의2①2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사업 시행자 감면 *종전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1년 유예	50 (조례)						50 (조례)				22년
§75의2①3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 사업장 감면	50 (조례)						50 (조례)				22년
§75의2①4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사업 시행자 감면	50 (조례)						50 (조례)				22년
§75의3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	50 (조례)						50 (조례)				21년
§76②	내공사의 제3자공급용 부동산중 국가, 지자체에 무상귀속하는 공공시설용지 감면							100	100			22년
§77②	수자원공사 단지조성용 부동산중 국가, 지자체에 무상귀속하는 공공시설용지 감면							100	100			22년
§78①②③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감면	35						35~ 60				22년
§78④2가	산업단지내 입주기업 감면 (신축)	50 (+조례25)										22년
§78④2나	산업단지내 입주기업 감면 (대수선)	25 (+조례15)										22년
§78의2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35						50				22년
§78의3①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감면 (*2년 이내 취득 부동산) (**그 다음 2년 동안)	100 (50*)						100 (5년) (50**)				22년
§78의3②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100						100 (5년) 50 (2년)				22년
§78의3③1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	50 (3년) 30 (2년)						50 (3년) 30 (2년)				22년
§78의3③2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하는 부동산	50						50 (3년) 30 (2년)				22년

규 정	주 요 내 용	세 목 별										일몰 기한 (까지)
		취	등	주개	주사	주중	지소	재	재도	자	지역	
§79①②	법인 지방이전 감면	100	100					100 (5년) 50 (3년)				21년
§80①	공장 지방이전 감면	100						100 (5년) 50 (3년)				21년
§81③	이전공공기관 직원 감면	62.5~ 100										22년
§81의2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62.5~ 100										21년
§82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개량 감면							100 (5년)				21년
§83①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감면	100						50 (5년)				21년
§83②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자로 부터 취득하는 부동산 감면	100						50 (5년)				21년
§84①	사권제한토지 등 감면							50				21년
§84②	사권제한토지(공공시설용) 감면							50				21년
§84③	철도안전법에 의한 사권제한 토지 감면							50				21년
§85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감면	100 50 25						100 50 25	100 50 25			20년 21년 22년
§85의2①1, 3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도시철도공사 제외) 감면	50 (조례)						50 (조례)				22년
§85의2①4	지방공사(택지개발사업 국가 무상귀속 토지) 감면							100				22년
§85의2②	지방공단 감면	100 (조례)						100 (조례)				22년
§85의2③	지자체 출자(출연)법인 감면	50 (조례)						50 (조례)				22년
§87① 1,2	신용협동조합 감면	100						100				23년
§87② 1,2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100						100				23년
§88①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감면	100						100				22년
§89①~④	정당에 대한 감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2년
§90①②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100			100	100		100	100		100	22년
§91	재외 외교관자녀 기숙사용 부동산 감면	2% (세율)	100									22년
§92	천재지변 등 대체취득 감면	100	100							100		

지방세 지출 재설계 현황

○ 농·어업 분야

제도내용	기존	개정
· 자경농민 취득하는 농지 · 임야에 대한 감면 연장	· 취득세 50%	· 재촌거리 기준 (20 → 30km) 완화 · 감면 연장 - 일몰기한 : '23.12.31.
· 자경농민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	· 취득세 50%	· 감면 연장 - 일몰기한 : '23.12.31.
· 귀농인 취득하는 농지·임야에 대한 귀농인 재촌거리 기준 완화	· 취득세 50%	· 재촌거리 기준 (20 → 30km) 완화
· 자동경운기 등 농기계류에 대한 감면 연장	· 취득세 100%	· 감면 연장 - 일몰기한 : '23.12.31.
·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	· 취득·재산세 100%	· 감면 연장 - 일몰기한 : '23.12.31.
· 임업후계자 등 교환·분합하는 임야에 대한 감면 연장	· 취득세 100%	· 감면 연장 - 일몰기한 : '23.12.31.
· 임업후계자 등 취득하는 보전산지에 대한 감면 연장	· 취득세 50%	· 감면 연장 - 일몰기한 : '23.12.31.
· 자영업인이 취득하는 어업권, 어선,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연장	· 취득세 50%	· 감면 연장 - 일몰기한 : '23.12.31.
· 농업법인(설립등기 2년) 영농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	· 취득세 75%	· 감면 연장 - 일몰기한 : '23.12.31.
· 농업법인 영농·유통·가공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	· 취득·재산세 50%	· 감면 연장 - 일몰기한 : '23.12.31.
· 어업법인 영어·유통·가공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	· 취득·재산세 50%	· 감면 연장 - 일몰기한 : '23.12.31.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유통자회사, 농수산물 유통시설 등에 대한 감면 연장	· 취득·재산세 50%	· 감면 연장 - 일몰기한 : '23.12.31.

○ 금융기관·공공행정 지원

제도내용	기존	개정
· 농·수협 등의 영농자금 융자 담보물 등기에 대한 감면 연장	· 등록면허세 50%	· 감면 연장 - 일몰기한 : '21.12.31.
·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구매 · 판매사업,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	· 취득·재산세 25%	· 감면 연장 - 일몰기한 : '23.12.31.
· 농협·수협·산림조합· 업연초생산협동조합 고유업무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	· 취득·재산세 100%	· 감면 연장 - 일몰기한 : '23.12.31.
· 신흥조합 신용·복지·교육사업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	· 취득·재산세 100%	· 감면 연장 - 유효기한 : '23.12.31.
· 새마을금고 신용·문화복지 후생·교육사업·개발사업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	· 취득·재산세 100%	· 감면 연장 - 유효기한 : '23.12.31.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흥 간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	· 취득·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취득·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사회적 취약계층, 서민 등 복지 지원

제도내용	기존	개정
· 지역아동센터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	· 취득·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감면 연장 - 일몰기한 : '23.12.31.
· 무료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	· 취득세 100%, 재산세 50% - 경로당 : 취득·재산·지역자원 ·재산세 도시 지역분 100%	· 감면 연장 - 일몰기한 : '23.12.31.
· 유료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	· 취득·재산세 25%	· 감면 연장 - 일몰기한 : '23.12.31.
· 청소년단체 (스카우트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등)에 대한 감면 연장	· 취득세 75%, 재산세 100%	· 감면 연장 - 일몰기한 : '23.12.31.
· 비영리법인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	· 취득세 100%, 재산세 50%	· 감면 연장 - 일몰기한 : '23.12.31.
· 국가유공자 등 대부금 취득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	· 취득세 100%	· 감면 연장 - 일몰기한 : '23.12.31.
·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면허에 대한 감면 연장	· 취득·재산세(도시지역분),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재산·종업원) 100%	· 감면 연장 - 일몰기한 : '23.12.31.
· 국가유공자 등 자활용사촌 내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	· 취득·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100%	· 감면 연장 - 일몰기한 : '23.12.31.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유지 지원

제도내용	기존	개정
· 산학협력단 직접사용 고유업무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	· 취득·재산세 75%	· 감면 연장 - 일몰기한 : '23.12.31.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 경영위기 중소기업 보유 자산 및 임대중인 자산에 대한 감면 연장	· 취득세 50%, 재산세(5년) 50%	· 감면 연장 - 일몰기한 : '23.12.31.
·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임대에 대한 감면 연장	· 취득·재산세 50%	· 감면 연장 - 일몰기한 : '23.12.31.
·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에 대한 감면 연장	· 취득·등록면허·재산세증과배제	· 감면 연장 - 일몰기한 : '23.12.31.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연장	· 취득세 50%, 재산세(3년) 50%	· 감면 연장 - 일몰기한 : '23.12.31.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	· 취득세 25%	· 감면 연장 - 일몰기한 : '23.12.31.
·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받은 자가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	· 취득세 50%, 재산세(3년) 50%	· 감면 연장 - 일몰기한 : '23.12.31.
· 중소기업협동조합 생산·가공·판매 등을 위한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	· 취득세 50%	· 감면 연장 - 일몰기한 : '23.12.31.
· 전통신장상인 협동조합이 생산·가공·판매 등을 위해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	· 취득세 75%	· 감면 연장 - 일몰기한 : '23.12.31.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	· 취득세 75%, 재산세 50%	· 감면 연장 - 일몰기한 : '23.12.31.
· 학교에서 취득하는 창업보육센터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	· 취득세 75%,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감면 연장 - 일몰기한 : '23.12.31.
· 창업보육센터(입주자)에 대한 감면 연장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증과배제	· 감면 연장 - 일몰기한 : '23.12.31.
·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 부동산에 대한 감면세목 축소 및 일몰 3년 연장	· 취득세 75%(창업후 4년내 취득), 재산세 3년간 100%, 2년간 50% 등록면허세 100%(설립, 증자 포함)	· 감면세목(등록면허세) 축소 · 감면 연장 - 일몰기한 : '23.12.31.

○ 친환경·신성장 기술 지원

제도내용	기존	개정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부동산에 대한 감면세목(목적세) 축소 및 일몰 3년 연장	취득세·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100%	- 감면세목(목적세) 축소 - 취득세·재산세 100% - 감면 연장 - 일몰기한 : '23.12.31.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축소 및 일몰 3년 연장	취득세 3~10%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에너지 효율 1+등급 이상</th><th>에너지 효율 1등급</th></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td>취득세 10%</td><td>취득세 5%</td></tr> <tr> <td>우수</td><td>취득세 5%</td><td>취득세 3%</td></tr> </tbody> </table>	구 분	에너지 효율 1+등급 이상	에너지 효율 1등급	최우수	취득세 10%	취득세 5%	우수	취득세 5%	취득세 3%	- 감면을 축소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에너지 효율 1+등급 이상</th><th>에너지 효율 1등급</th></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td>취득세 10%</td><td>-</td></tr> <tr> <td>우수</td><td>취득세 5%</td><td>-</td></tr> </tbody> </table> - 감면 연장 - 일몰기한 : '23.12.31.	구 분	에너지 효율 1+등급 이상	에너지 효율 1등급	최우수	취득세 10%	-	우수	취득세 5%	-
구 분	에너지 효율 1+등급 이상	에너지 효율 1등급																		
최우수	취득세 10%	취득세 5%																		
우수	취득세 5%	취득세 3%																		
구 분	에너지 효율 1+등급 이상	에너지 효율 1등급																		
최우수	취득세 10%	-																		
우수	취득세 5%	-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등급별 감면을 차등 및 일몰 3년 연장	1~5등급 취득세 15%	- 등급별 감면을 차등 1~3등급 취득세 20% 4등급 취득세 18% 5등급 취득세 15% - 감면 연장 - 일몰기한 : '23.12.3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대한 감면기준 상향 및 일몰 3년 연장	- 취득세 10% ※ 총 에너지 절감율 55% 이상																			

2021

지방세 길라잡이

발행일 2021년 3월 31일

발행인 배 진 환 한국지방세연구원장

발행처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전화 02-2071-2703

팩스 02-2071-2722

홈페이지 <http://www.kilf.re.kr>

편집·디자인 [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 스쿨프린팅그룹(주)
02-2285-3366 | www.schoolpt.co.kr

※ 본 책은 안내·참고용이므로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